

양 천 구

주 의 요 구

제 목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장결정 처리기한 지연 및 민원처리결과 입력 부적정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■■■■■과

내 용

1. 업무개요

■■■■과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2조 및 제26조에 의하면,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자에 대한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해야 하고, 그 결정의 요지를 급여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, ① 부양의무자의 소득·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으며,

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■■■■과는 2022년~2023년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보장결정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최대 324일까지 지연하여 처리하였으며, 민원처리 결과를 실제 급여 보장결정을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처리완료로 입력하였다. (※ 세부내역 별도송부)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■■■■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5. 조치할 사항

■■■■과장은

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,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. (주의)